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18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이재정·조계원·강유정

김한규 · 윤준병 · 김준형

박홍배 • 서미화 • 김태년

안태준 · 김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

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도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스포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 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스포츠의 산업적·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 및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질 높은 삶을 목표로 행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 및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질 높		
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	은 삶을 목표로 행하는 사회		
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	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			
<u>를 말한다.</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